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5년 7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2% 증가(전월대비 0.5% 증가)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4.8%), 석유정제(8.5%)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자부품(-7.0%), 통신·방송장비(-29.4%)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함(전월대비 0.4%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5.4%), 운수(-2.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11.7%), 부동산·임대(9.9%)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전월대비 1.7% 증가).

◆ 2015년 7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3.4%) 등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6.9%)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함(전월대비 1.9%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함(전월대비 1.3%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재개발 주택, 기타토목, 토지조성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함.

◆ 2015년 7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보합

◆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0.1% 감소)

-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22(2010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전월대비 0.2%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3%), 음식·숙박(2.4%), 교육(1.8%), 식료품·비주류음료(2.2%)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6.5)과 주택·수도·전기·연료(-1.6%)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8월 생활물가지수는 107.92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전월대비 0.1% 증가).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7월	1/4	2/4p	7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4.0	-0.9	-1.5	-3.3(-0.5)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4.3	-1.0	-1.5	-3.5(-0.4)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2.4	-0.7	-1.3	-1.8(0.5)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1	-1.1	-2.8	-1.2	-0.4	-2.6	0.2	3.7	-0.7	-0.2	-1.7(0.9)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1.1	-0.6	-2.5	-2.1(0.2)
	서비스업 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9	2.8	2.4	2.2(1.7)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0.6	1.6	3.0	1.9(1.9)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2.8	8.4	5.1	6.9(1.3)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0.8	0.6	0.5	-0.1(0.1)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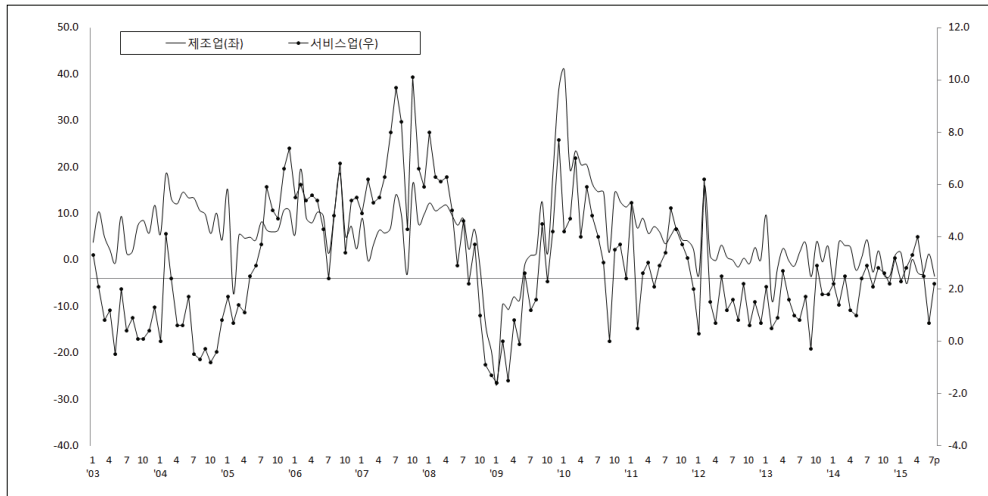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8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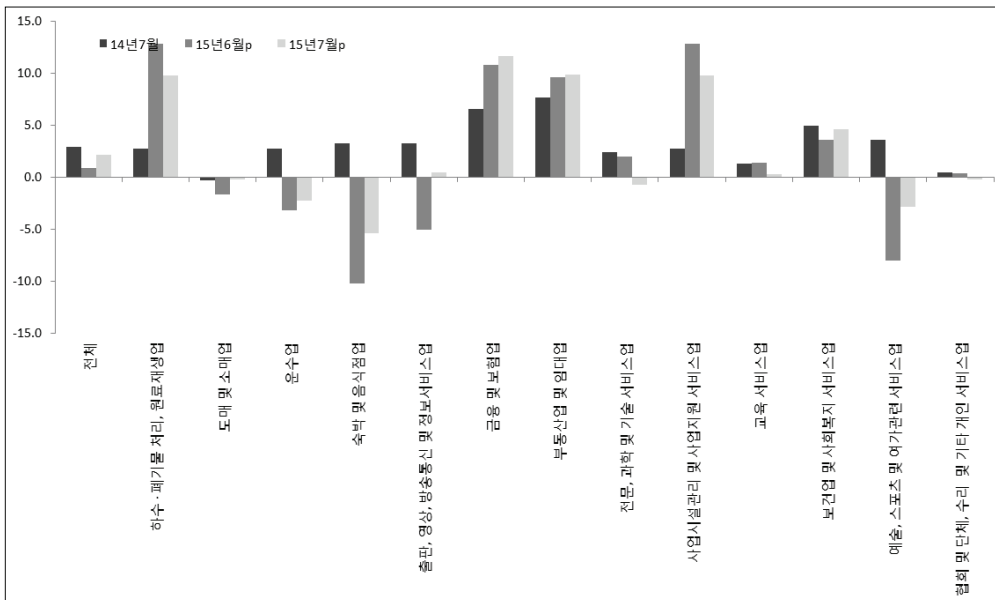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6월, 7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9), 『2015년 7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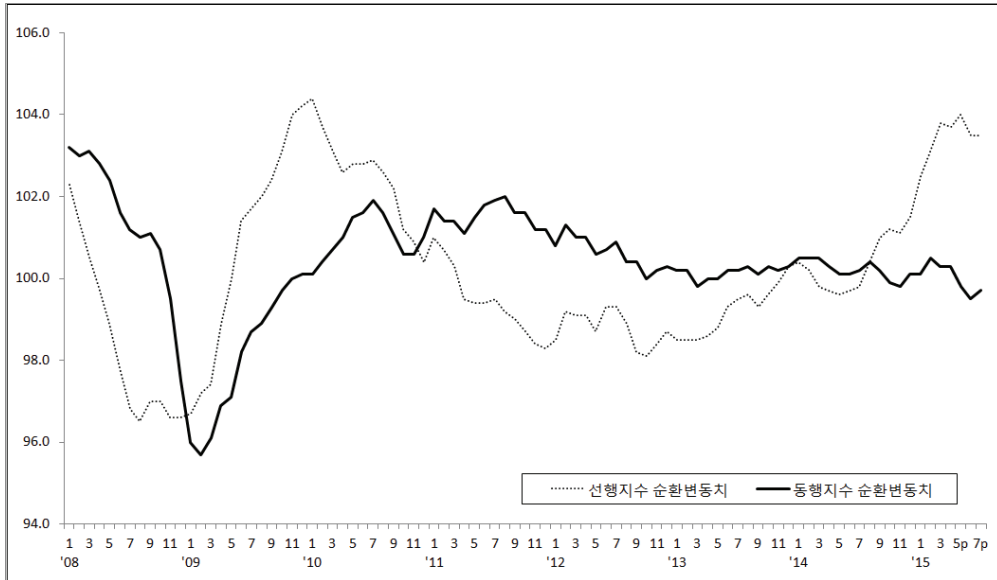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하락, 취업자 증가세 둔화

- 2015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0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9천 명(1.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607천 명으로 110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은 11,457천 명으로 180천 명(1.6%) 증가하였음.
- 2015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0%)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여성(52.1%)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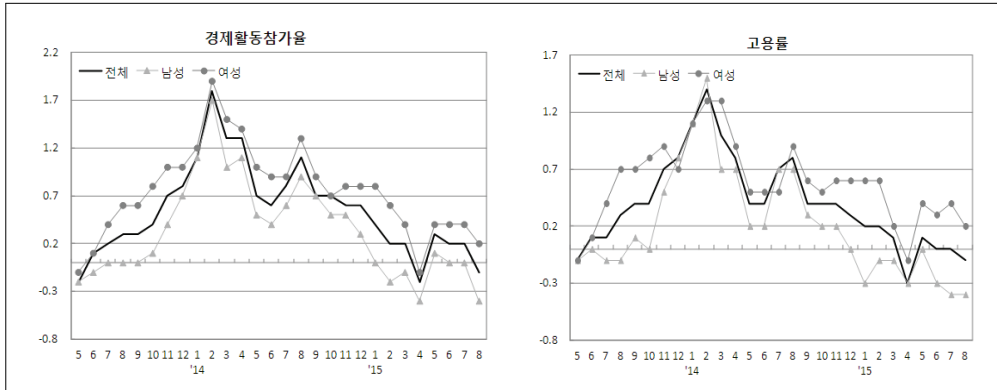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5,945 (3.4)	26,767 (2.4)	26,810 (2.4)	26,775 (2.7)	26,622 (2.1)	26,356 (1.6)	27,140 (1.4)	27,303 (1.5)	27,064 (1.1)
참가율	61.3	63.1	63.0	62.9	62.4	61.5	63.2	63.4	62.8
취업자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885 (2.3)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305 (1.3)	26,141 (1.0)
고용률	58.8	60.8	60.9	60.8	60.4	59.0	60.7	61.1	60.7
실업자	1,031	977	884	890	854	1,089	1,042	998	923
실업률	4.0	3.7	3.3	3.3	3.2	4.1	3.8	3.7	3.4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1.4)	15,760 (-1.4)	15,797 (-1.8)	16,066 (-0.6)	16,469 (0.4)	15,835 (1.0)	15,751 (0.7)	16,022 (1.4)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9). 『2015년 8월 고용동향』.

- 2015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2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5천 명(1.4%)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0천 명(3.0%)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 명(0.6%)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5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천 명(9.8%)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75천 명으로 110천 명(-2.6%) 감소하음.
- 2015년 8월 중 고용률은 60.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여성의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8월 중 취업자는 26,1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6천 명(1.0%)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0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천 명(0.6%)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1,0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천 명(1.5%)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그림 4]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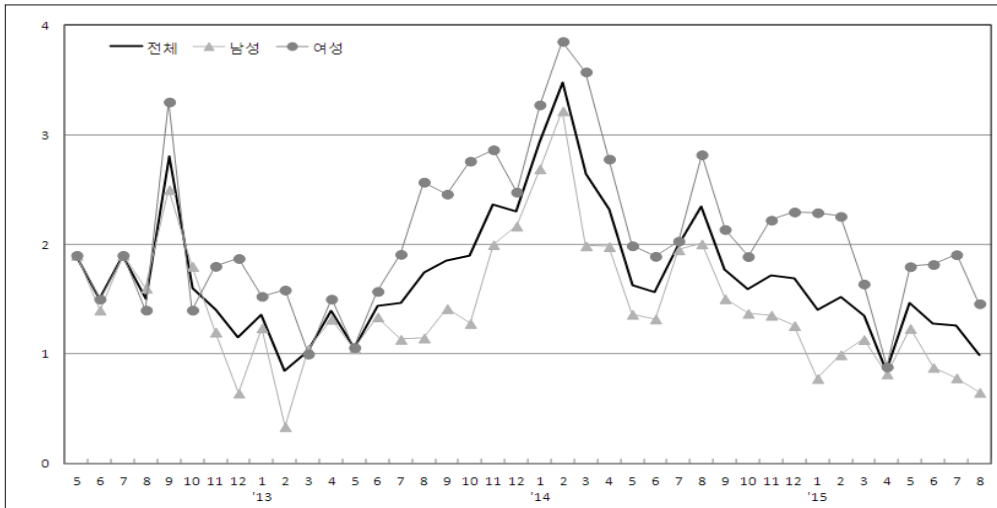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8월 중 실업자는 9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 명(3.7%) 증가,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2.6%)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7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 명(5.4%)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5%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없었고, 여성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15~29세와 50대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8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35천 명, 0.9%), 50~59세(121천 명, 2.1%), 60세 이상(177천 명, 4.9%)에서 증가, 30~39세(-60천 명, -1.0%), 40~49세(-17천 명, -0.3%)에서 감소함.
- 교육수준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고졸(78천 명, 0.8%), 대졸 이상(346천 명, 3.1%)에서 증가하였고, 중졸이하(-168천 명, -3.7%)에서 감소하였음.

〈표 3〉 연령별·교육수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전 체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885 (2.3)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305 (1.3)	26,141 (1.0)
15~29세	3,840 (2.6)	3,843 (1.4)	3,941 (2.7)	3,955 (3.9)	3,855 (1.5)	3,872 (0.8)	3,933 (2.3)	4,026 (0.5)	3,990 (0.9)
30~39세	5,672 (-0.1)	5,721 (-0.7)	5,741 (-0.1)	5,734 (-0.1)	5,722 (-0.5)	5,671 (0.0)	5,665 (-1.0)	5,700 (-0.9)	5,674 (-1.0)
40~49세	6,645 (1.5)	6,704 (0.5)	6,678 (0.2)	6,668 (0.3)	6,700 (0.1)	6,598 (-0.7)	6,690 (-0.2)	6,679 (0.1)	6,651 (-0.3)
50~59세	5,684 (6.0)	5,878 (4.0)	5,891 (3.8)	5,880 (4.2)	5,926 (3.3)	5,861 (3.1)	6,016 (2.3)	6,059 (3.1)	6,001 (2.1)
60세 이상	3,072 (7.6)	3,643 (5.5)	3,676 (5.5)	3,649 (5.8)	3,565 (6.0)	3,265 (6.3)	3,793 (4.1)	3,842 (4.7)	3,826 (4.9)
중졸 이하	4,210 (-3.1)	4,664 (-4.8)	4,614 (-4.0)	4,589 (-3.6)	4,472 (-3.5)	4,070 (-3.3)	4,495 (-3.6)	4,497 (-2.8)	4,421 (-3.7)
고졸	9,908 (2.6)	10,060 (2.1)	10,224 (3.3)	10,216 (3.7)	10,229 (3.0)	10,117 (2.1)	10,244 (1.8)	10,366 (0.8)	10,294 (0.8)
대졸 이상	10,795 (6.0)	11,067 (4.7)	11,089 (3.6)	11,080 (3.7)	11,067 (2.7)	11,080 (2.6)	11,360 (2.6)	11,442 (3.4)	11,426 (3.1)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9). 『2015년 8월 고용동향』.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5년 8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3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6천 명(2.9%)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8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9천 명(-3.9%)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675천 명으로 510천 명(4.2%), 일용근로자는 1,531천 명으로 24천 명(1.6%)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5,106천 명으로 2천 명 가량 증가하여 변동 폭이 미미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621천 명으로 183천 명(-3.1%), 무급가족종사자는 1,208천 명으로 97천 명(-7.4%) 감소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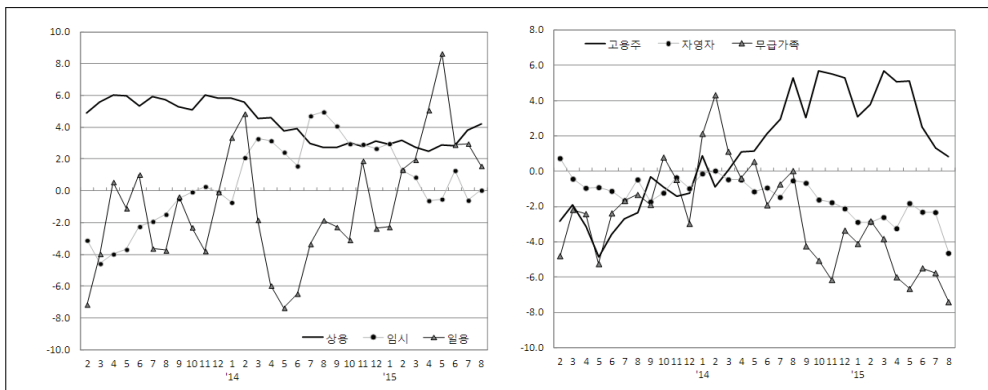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전 체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885 (2.3)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305 (1.3)	26,141 (1.0)
비임금근로자	6,597 (0.3)	6,984 (-0.3)	7,047 (0.0)	7,108 (0.8)	6,799 (-0.8)	6,509 (-1.3)	6,871 (-1.6)	6,882 (-2.2)	6,829 (-3.9)
자영업주	5,512 (-0.1)	5,712 (-0.2)	5,760 (0.3)	5,804 (1.0)	5,625 (0.1)	5,463 (-0.9)	5,675 (-0.6)	5,656 (-1.3)	5,621 (-3.1)
무급가족종사자	1,085 (2.5)	1,272 (-0.6)	1,287 (-1.7)	1,305 (0.0)	1,175 (-4.9)	1,046 (-3.6)	1,195 (-6.1)	1,226 (-5.8)	1,208 (-7.4)
임금근로자	18,316 (4.0)	18,806 (2.6)	18,880 (2.8)	18,776 (2.9)	18,968 (2.6)	18,758 (2.4)	19,227 (2.2)	19,423 (2.5)	19,312 (2.9)
상용근로자	11,985 (5.3)	12,175 (4.1)	12,181 (2.8)	12,165 (2.7)	12,280 (3.0)	12,341 (3.0)	12,507 (2.7)	12,627 (3.8)	12,675 (4.2)
임시근로자	4,835 (1.5)	5,063 (2.4)	5,153 (4.6)	5,104 (5.0)	5,076 (2.9)	4,918 (1.7)	5,066 (0.1)	5,188 (-0.6)	5,106 (0.0)
일용근로자	1,496 (2.1)	1,567 (-6.6)	1,546 (-2.5)	1,507 (-1.8)	1,612 (-1.2)	1,500 (0.3)	1,654 (5.5)	1,608 (3.0)	1,531 (1.6)
36시간 미만	3,593 (-35.4)	3,397 (-29.5)	5,229 (2.9)	8,580 (4.9)	3,659 (7.8)	3,689 (2.7)	3,661 (7.8)	3,752 (4.9)	7,129 (-16.9)
36시간 이상	20,829 (15.1)	22,090 (9.3)	20,184 (1.9)	16,435 (0.8)	21,779 (0.7)	21,091 (1.3)	22,120 (0.1)	22,184 (0.5)	18,205 (10.8)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9), 『2015년 8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8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1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51천 명(-16.9%)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205천 명으로 1,770천 명(10.8%) 증가하였음.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5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56천 명, 3.6%), 건설업(10천 명,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8천 명,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110천 명, 1.2%),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65천 명, 2.2%)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14천 명, -7.2%)에서는 감소함.

〈표 5〉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전 산업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885 (2.3)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305 (1.3)	26,141 (1.0)
농림어업	1,179 (1.0)	1,631 (-3.2)	1,603 (-7.0)	1,596 (-7.3)	1,395 (-7.2)	1,092 (-7.3)	1,505 (-7.7)	1,513 (-5.7)	1,482 (-7.2)
제조업	4,279 (3.0)	4,319 (3.3)	4,346 (4.7)	4,335 (5.3)	4,374 (3.0)	4,418 (3.2)	4,466 (3.4)	4,528 (3.9)	4,491 (3.6)
건설업	1,683 (1.6)	1,813 (0.6)	1,833 (3.2)	1,810 (3.7)	1,854 (4.0)	1,756 (4.3)	1,857 (2.5)	1,874 (1.4)	1,820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37 (5.5)	5,798 (3.8)	5,930 (4.9)	5,931 (5.0)	5,992 (4.2)	5,984 (2.5)	5,927 (2.2)	6,013 (1.4)	5,959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865 (2.4)	9,147 (1.9)	9,176 (2.1)	9,183 (2.7)	9,128 (1.5)	8,978 (1.3)	9,268 (1.3)	9,298 (1.3)	9,293 (1.2)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5 (1.9)	3,067 (-0.5)	3,026 (-2.5)	3,016 (-2.9)	3,015 (-1.3)	3,029 (-0.9)	3,063 (-0.1)	3,066 (0.6)	3,081 (2.2)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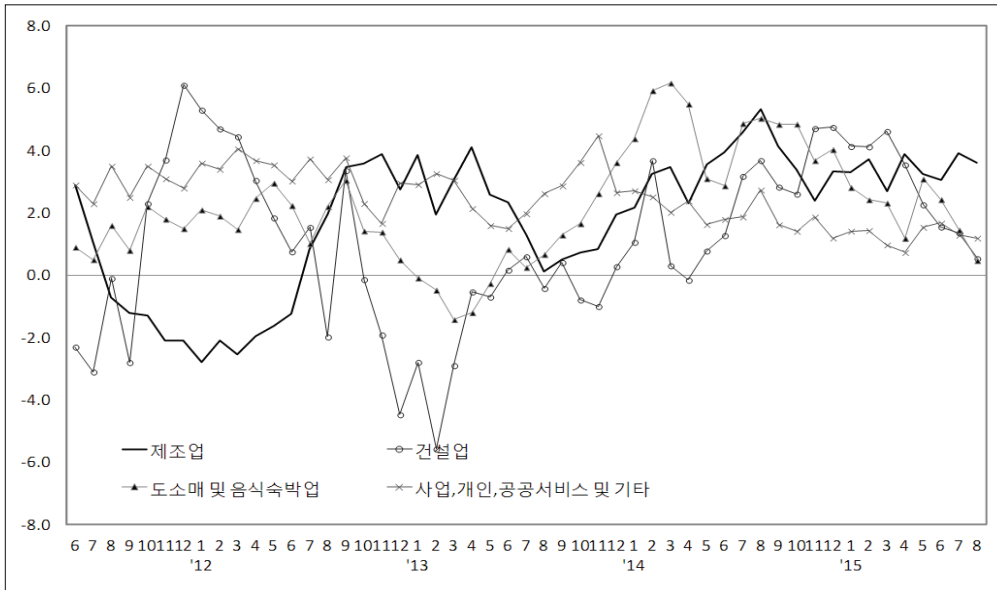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5. 9), 『2015년 8월 고용동향』.

[그림 7]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5년 6월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

○ 2015년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1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함.

— 2015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404천 원)은 정액급여(3.6%)의 상승폭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3% 초반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5년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함.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401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함.
- 2015년 1~6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3.2% 상승함.
 - 2015년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41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2%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3,425천 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2% 상승한 1,408천 원임.
- 2015년 6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함.
 - 2015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8% 상승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한데 비해 명목임금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함.
 - 2015년 1~6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2.6% 상승함.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평균 대비 0.5% 상승에 불과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표 6〉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6월 평균	6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995 (5.3)	3,111 (3.9)	3,190 (2.5)	3,141 (2.4)	3,109 (1.7)	3,241 (3.2)	3,217 (3.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378 (2.4)	3,328 (2.5)	3,293 (1.6)	3,404 (3.4)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660 (3.2)	2,643 (3.2)	2,644 (3.0)	2,722 (3.0)	2,740 (3.6)
	초과급여	181 (1.0)	184 (1.7)	201 (9.3)	198 (8.7)	212 (9.1)	216 (9.1)	224 (5.6)
	특별급여	527 (5.8)	537 (1.8)	516 (-3.7)	487 (-3.1)	438 (-9.0)	487 (-0.1)	441 (0.7)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87 (0.7)	1,391 (1.4)	1,351 (0.2)	1,408 (1.2)	1,401 (3.7)	
소비자물가지수	106.3 (2.2)	107.8 (1.2)	109.0 (1.3)	109.1 (1.4)	109.1 (1.7)	109.8 (0.5)	109.8 (0.7)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1.0	0.0	2.6	2.8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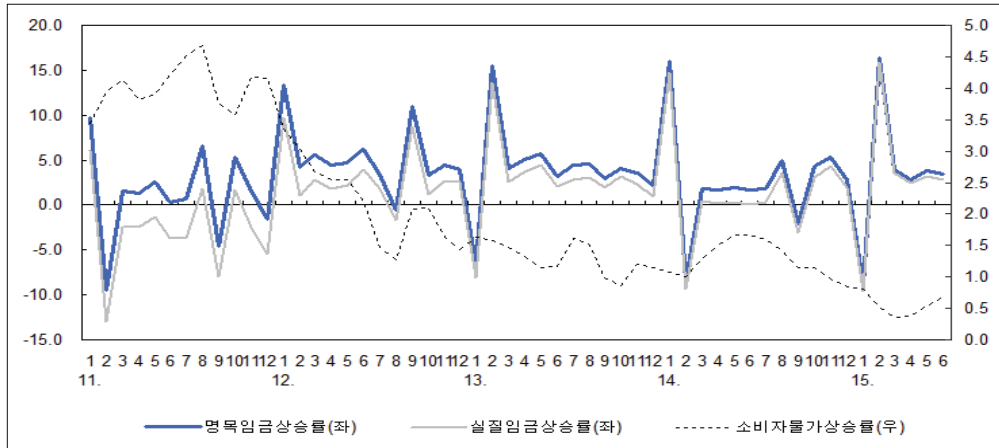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2015년 8월 협약임금 인상률 4.2%

- 2015년 8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2%로 2014년 8월 인상률(4.5%)보다 0.3%p 하락함.
- 2015년 8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51.8%로 전년동월(41.8%)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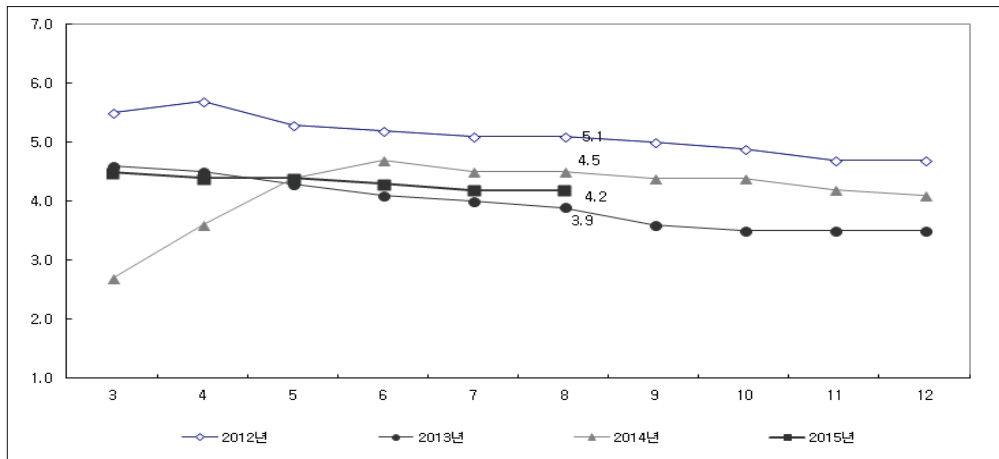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6월 월평균 임금은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상승

○ 2015년 6월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 상승함.

- 이외에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6%), 금융 및 보험업(4.9%), 사업서비스업(4.9%),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4%)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3.1%)은 전 산업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그러나 도매 및 소매업(-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1%)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6월 평균		1~6월 평균	
			6월	6월	6월	6월
전 산업	3,111 (3.9)	3,190 (2.5)	3,141 (2.4)	3,109 (1.7)	3,241 (3.2)	3,217 (3.5)
광업	3,557 (2.5)	3,480 (-2.1)	3,501 (-3.1)	4,044 (-6.3)	3,621 (3.4)	4,124 (2.0)
제조업	3,371 (4.7)	3,506 (4.0)	3,456 (4.7)	3,357 (3.1)	3,551 (2.7)	3,460 (3.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2.9)	5,554 (0.2)	5,499 (2.9)	7,225 (0.4)	5,728 (4.2)	7,533 (4.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3.3)	2,812 (2.5)	2,756 (3.2)	2,789 (4.3)	2,863 (3.9)	2,883 (3.4)
건설업	2,414 (6.2)	2,497 (3.4)	2,477 (2.3)	2,489 (3.8)	2,589 (4.5)	2,575 (3.5)
도매 및 소매업	3,168 (1.5)	3,206 (1.2)	3,147 (1.2)	3,165 (2.1)	3,215 (2.2)	3,153 (-0.4)
운수업	2,732 (5.5)	2,805 (2.7)	2,694 (1.3)	2,800 (4.3)	2,842 (5.5)	2,898 (3.5)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1.9)	1,785 (0.7)	1,737 (0.3)	1,697 (0.4)	1,800 (3.6)	1,763 (3.9)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2.2)	3,905 (-0.8)	3,878 (-2.5)	3,891 (-0.2)	3,989 (2.9)	3,977 (2.2)
금융 및 보험업	5,058 (1.4)	5,234 (3.5)	5,186 (1.2)	4,926 (-1.0)	5,499 (6.0)	5,165 (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3.4)	2,323 (2.3)	2,294 (2.5)	2,290 (-2.7)	2,457 (7.1)	2,521 (10.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3.2)	4,419 (4.2)	4,314 (5.4)	4,341 (4.5)	4,344 (0.7)	4,583 (5.6)
사업서비스업	1,883 (5.2)	1,924 (2.2)	1,896 (2.2)	1,897 (1.1)	1,976 (4.3)	1,990 (4.9)
교육서비스업	3,261 (4.4)	3,375 (3.5)	3,330 (1.6)	3,144 (2.1)	3,451 (3.6)	3,269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2.0)	2,700 (1.4)	2,623 (-0.7)	2,699 (0.9)	2,748 (4.8)	2,697 (-0.1)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5.2)	2,398 (3.1)	2,371 (3.9)	2,392 (5.4)	2,415 (1.9)	2,484 (3.8)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1.0)	2,200 (-0.5)	2,232 (2.0)	2,243 (2.0)	2,331 (4.4)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6월 평균 임금은 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 대비 증가함.
 - 2015년 1~6월 평균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7.1%)이며,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6.0%), 운수업(5.5%) 순으로 높음.
 - 특히 전년동평균 대비 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제조업도 2.7% 상승에 그침.

◆ 2015년 6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평균 임금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4%, 2.6% 상승

- 2015년 6월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6월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2015년 6월 기준 5~299인 중소기업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한 3,047천 원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한 4,846천 원임.
- 2015년 6월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8.67% 하락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25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67%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41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상승함.
- 2015년 1~6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
 -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3,056천 원)은 전년동평균 대비 3.6% 상승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4,948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4.7% 상승함으로서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비상용근로자의 1~6월 평균 임금은 전년동평균 대비 1.3% 상승한 1,415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0.4% 상승한 1,340천 원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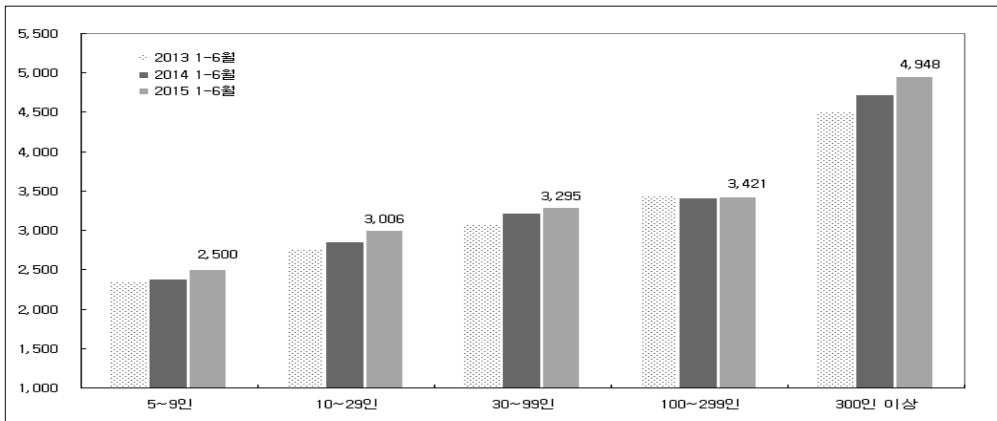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3		2014		1~6월 평균		6월		2015		1~6월 평균		6월	
전 규모 (5인 이상)	전체	3,111	(3.9)	3,190	(2.5)	3,141	(2.4)	3,109	(1.7)	3,241	(3.2)	3,217	(3.5)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328	(2.5)	3,293	(1.6)	3,425	(2.9)	3,404	(3.4)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43	(3.2)	2,644	(3.0)	2,722	(3.0)	2,740	(3.6)		
	초과급여	184	(1.7)	201	(9.3)	198	(8.7)	212	(9.1)	216	(9.1)	224	(5.6)		
	특별급여	537	(1.8)	516	(-3.7)	487	(-3.1)	438	(-9.0)	487	(-0.1)	441	(0.7)		
5~299인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391	(1.4)	1,351	(0.2)	1,408	(1.2)	1,401	(3.7)		
	소계	2,764	(3.8)	2,836	(2.6)	2,779	(1.9)	2,785	(1.9)	2,889	(4.0)	2,879	(3.4)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2,950	(2.0)	2,953	(1.7)	3,056	(3.6)	3,047	(3.2)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486	(2.9)	2,486	(2.4)	2,562	(3.0)	2,565	(3.2)		
	초과급여	160	(3.0)	172	(7.5)	169	(6.5)	181	(7.3)	182	(7.5)	189	(4.4)		
300인 이상	특별급여	345	(-0.3)	332	(-3.6)	295	(-6.9)	286	(-6.8)	312	(6.1)	293	(2.4)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	(-0.1)	1,397	(0.7)	1,349	(-1.2)	1,415	(1.3)	1,418	(5.1)		
	소계	4,447	(3.7)	4,678	(5.2)	4,582	(4.7)	4,540	(5.5)	4,788	(4.5)	4,657	(2.6)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4,726	(4.8)	4,700	(5.8)	4,948	(4.7)	4,846	(3.1)		
	정액급여	3,093	(4.3)	3,272	(5.8)	3,221	(4.7)	3,295	(7.7)	3,384	(5.1)	3,444	(4.5)		
300인 이상	초과급여	270	(-1.6)	316	(16.9)	306	(14.7)	339	(19.5)	358	(17.0)	363	(7.1)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1,200	(2.9)	1,066	(-3.0)	1,206	(0.5)	1,039	(-2.6)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	(11.1)	1,335	(11.0)	1,373	(16.9)	1,340	(0.4)	1,254	(-8.7)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6월 평균 임금총액(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주: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6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8.6% 증가한 180.4시간
(월력상 근로일수 2일 증가, 전년 6·4 지방선거일을 휴일로 보면 3일 증가)

- 2015년 6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3시간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87.6시간)과 소정실근로시간(174.4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9.3%, 10.4% 증가한 반면 초과근로시간(13.2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110.3시간임.

〈표 9〉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6월 평균			1~6월 평균		
			6월		6월			
전체 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0.2 (-1.4)	166.1 (1.1)	170.6 (0.2)	180.4 (8.6)		
상용 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6.0 (-1.0)	171.7 (1.3)	176.4 (0.2)	187.6 (9.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2.9 (-1.6)	157.9 (0.8)	163.4 (0.3)	174.4 (10.4)		
상용 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3.2)	13.0 (5.7)	13.7 (7.0)	13.0 (0.0)	13.2 (-3.6)		
비상용근로시간	122.5 (0.2)	117 (-4.5)	116.7 (-5.6)	112.6 (-2.8)	112.5 (-3.6)	110.3 (-2.0)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6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0.2% 증가함.
 - 2015년 1~6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6.4 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2%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112.5시간)는 전년동평균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6월 평균 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함.
 - 특히 출판·영상 및 방송통신서비스업(12.3%),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3%)은 근로시간 증가율이 아주 높았음.
 - 반면 건설업(4.6%)과 숙박 및 음식점업(5.3%)의 평균 근로시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았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9.3시간), 그 다음으로 높은 산업은 제조업(196.2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1~6월 평균 근로시간은 산업간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1%)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감소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은 건설업(-1.8%)과 교육서비스업(-1.1%)으로 나타남.
 - 2015년 1~6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0.5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은 제조업(184.8시간)으로 나타남. 한편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산업은 건설업(145.3시간)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70.2 (-1.4)	166.1 (1.1)	170.6 (0.2)	180.4 (8.6)
광업	180.6(-2.5)	179.4(-0.7)	178.0 (-1.6)	172.5 (-1.3)	177.6 (-0.2)	187.8 (8.9)
제조업	185.0(-0.8)	185.4(0.2)	185.2 (0.2)	181.7 (2.4)	184.8 (-0.2)	196.2 (8.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69.0 (-3.0)	163.0 (-3.6)	169.7 (0.4)	174.8 (7.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1.5)	177.8(-2.3)	176.5 (-2.9)	170.8 (-1.7)	175.1 (-0.8)	186.7 (9.3)
건설업	152.7(0.1)	148.5(-2.8)	148.0 (-4.3)	144.2 (-0.6)	145.3 (-1.8)	150.8 (4.6)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70.9 (-1.3)	167.1 (1.5)	171.3 (0.2)	180.9 (8.3)
운수업	177.8(-2.1)	173.1(-2.6)	171.7 (-3.3)	167.2 (-2.3)	171.9 (0.1)	179.0 (7.1)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2.6 (-1.7)	167.0 (0.0)	173.9 (0.8)	175.9 (5.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0.5)	161.9(-0.7)	161.2 (-0.8)	154.3 (1.2)	161.9 (0.4)	173.3 (12.3)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0.4)	162.2 (-0.1)	154.3 (2.3)	162.4 (0.1)	174.8 (1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88.4 (-2.0)	184.6 (-0.2)	190.5 (1.1)	199.3 (8.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61.7 (-1.2)	155.5 (1.0)	162.6 (0.6)	174.7 (12.3)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70.3 (-0.7)	164.2 (1.0)	170.3 (0.0)	179.6 (9.4)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0.9)	151.7 (1.5)	144.5 (4.6)	150.1 (-1.1)	158.0 (9.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1.6)	169.6(-1.4)	167.7 (-2.6)	164.6 (0.4)	169.2 (0.9)	179.9 (9.3)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0.1)	158.9(0.6)	157.5 (0.2)	155.2 (0.7)	158.2 (0.4)	166.9 (7.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1.6 (-3.5)	156.9 (-1.8)	160.9 (-0.4)	168.9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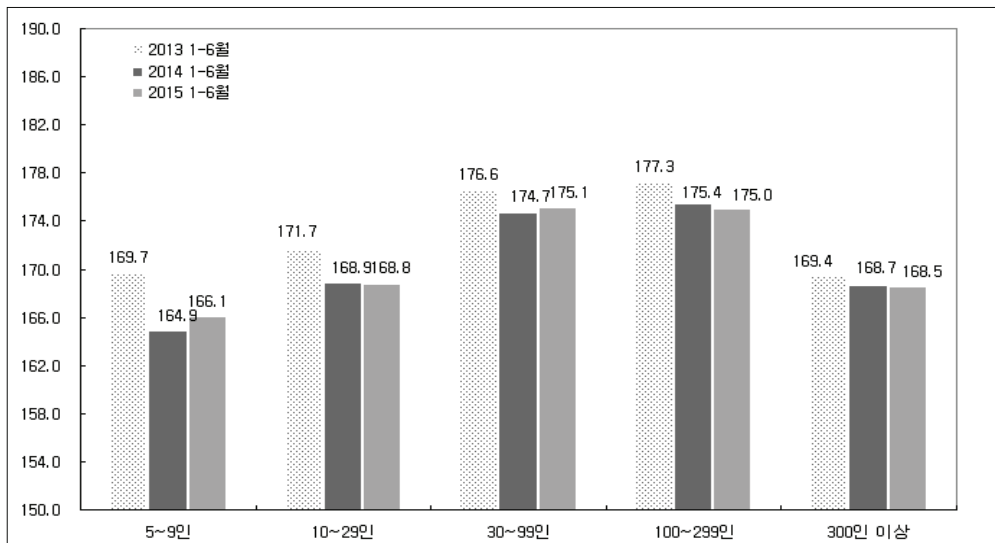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6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에서 모두 증가함.
 -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한 180.9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9.2% 증가한 178.2시간을 기록함.
 - 중소기업 사업체를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한 174.5시간, 10~29인 사업체는 7.9% 증가한 178.3시간, 30~99인 사업체는 9.4% 증가한 186.8시간, 100~ 299인 사업체는 7.8% 증가한 183.9시간을 기록함.
- 2015년 1~6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100~299인 및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각각 전년동평균대비 0.4시간, 0.2시간 감소함.
 - 5~9인 및 30~39인 사업체에서는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1.2시간, 0.4시간 증가함. 사업체 규모에 따라 증감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 변동 폭이 -0.4~+1.2시간으로 소폭의 변동을 나타냄.
 - 2013, 2014, 2015년 1~6월을 통틀어서 볼 때, 중간 규모(30~99인 및 100~299인)의 사업체에서의 근로시간이 비교적 많았음.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1~6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주: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가계수지 동향

◆ 2015년 2/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5년 2/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재산소득(-6.3%), 사업소득(-2.1%)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1.7%), 이전소득(15.2%), 비경상소득(25.9%)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함(실질로는 2.3% 증가).
 -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2.1%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25.9% 증가함.
 - －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함(실질로는 0.1% 증가).
 - － 비소비지출의 경우, 경상조세(4.0%), 비경상조세(39.9%), 연금(2.2%), 사회보험(3.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고, 이자비용 지출은 이자율 하락에 기인하여 5.7% 감소함.
 - － 2/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함.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p)

	2014		2015			
	2/4분기		1/4분기		2/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 득	4,152.2	2.8	4,517.3	2.6	4,270.6	2.9
경상소득	4,025.9	2.9	4,325.4	2.8	4,111.5	2.1
근로소득	2,761.5	4.1	3,013.8	3.8	2,809.7	1.7
사업소득	872.4	0.7	821.6	-4.6	854.1	-2.1
재산소득	18.1	-10.8	23.7	17.9	17.0	-6.3
이전소득	373.9	-0.1	466.4	10.4	430.8	15.2
비경상소득	126.3	-0.4	191.9	-2.1	159.0	25.9
소비지출	2,477.7	3.1	2,653.4	0.0	2,494.3	0.7
비소비지출	771.6	2.4	848.8	1.0	786.8	2.0
처분가능소득	3,380.6	2.8	3,668.4	3.0	3,483.8	3.1
흑자액	902.9	2.2	1,015.0	11.6	989.5	9.6
흑자율	26.7	3.7p	27.7	2.1	28.4	1.7
평균 소비성향	73.3	-3.8p	72.3	-2.1	71.6	-1.7

주 : 1) 실질소득(소비)=(소득/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5)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8),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

- 2015년 2/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으며(0.0~12.6%), 가처분소득도 모든 분위에서 증가함(0.6~12.5%).

〈표 12〉 2015년 2/4분기 소득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가구원 수	2.44명		3.06명		3.29명		3.48명		3.62명	
가구주 연령	59.5세		49.7세		46.9세		47.1세		48.3세	
소득	1,486.2	9.6	2,867.6	3.5	3,878.6	2.4	5,040.6	1.1	8,075.2	2.8
경상소득	1,431.5	10.4	2,807.2	2.7	3,805.2	2.4	4,948.0	0.9	7,561.7	1.2
근로소득	654.6	12.6	1,743.7	0.0	2,571.1	3.3	3,629.4	0.0	5,446.5	1.6
비경상소득	54.7	-6.3	60.4	53.4	73.4	2.7	92.6	19.5	513.5	33.4
가계지출	1,506.5	0.7	2,466.0	2.4	3,218.2	2.9	3,874.1	3.9	5,338.2	-2.6
소비지출	1,274.8	1.5	1,997.5	2.6	2,491.0	1.5	2,930.5	4.0	3,776.4	-3.4
비소비지출	231.7	-3.6	468.5	1.9	727.3	7.9	943.7	3.5	1,561.8	-0.6
처분가능소득	1,254.5	12.5	2,399.1	3.8	3,151.4	1.2	4,096.9	0.6	6,513.4	3.6
흑자액	-20.3	85.5	401.7	10.2	660.4	0.2	1,166.5	-7.1	2,737.0	15.3
흑자율	-1.6	11.0	16.7	1.0	21.0	-0.2	28.5	-2.3	42.0	4.2
평균 소비성향	101.6	-11.0	83.3	-1.0	79.0	0.2	71.5	2.3	58.0	-4.2

자료: 통계청(2015. 8),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8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569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 지난 8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595건)보다 26건 낮은 수치임.
- 지난 8월 조정성립률 50.6%
 - － 지난 8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0.9%에 비해 0.3% 낮아진 수치임.

〈표 13〉 2014년, 2015년 8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8	569	532	218	88	130	213	30	183	27	74	37	50.6
2014. 8	595	567	237	98	139	229	31	198	38	63	28	50.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43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63건)보다 174건 높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5.0%(142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5.0%(264건)를 차지함.

〈표 14〉 2014년, 2015년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8	437	406	142	0	63	106	95	0	30
2014. 8	263	239	66	4	57	32	80	0	2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지원 강화

-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사업시행지침」에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로 함.
 - 게다가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함.

〈표 15〉 제도개선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개선(15.9.18.부터)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small>*국가 및 지자체, 5인미만 등 제외</small>	좌 동
지원율	임금상승분의 50%	→ 임금상승분의 70% 단, 청년은 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지원 없음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
지원한도 및 기간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좌 동

자료 :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지원사업 개편」, (2015. 09).

-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정부,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조 7,937억 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 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 원으로 20.6%가 늘어났음.
 - 정부는 지난 7.27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핵심 과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청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을 대폭 확대함.
- 2016년 청년희망 일자리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 본격 시행, 고용디딤돌 제도 도입, 양질의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
 -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고교·대학 재학생에게도 혜택을 제공함.
 -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고용존을 운영하고 대학 창조일자리 센터를 확대함.

〈표 16〉 청년희망 일자리 주요 내용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양질의 일 경험 기회	강소·중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한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 확대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일학습병행제를 재확단계로 확산	기존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확단계(고교·전문대·대학)로 본격 확산하고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도입	교육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도입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 도입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고용존(Zone) 설치	지역별로 고용존(Zone)을 신설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운영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K-Move사업도 내실화 및 지원을 확대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훈련 등을 제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창업기업의 창업 후 사업화 지원을 강화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5. 09), 「청년희망분야 예산 발표」.

◆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합의

○ 노사정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함.

－ 노사정은 일반해고 요건은 근로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노사정이 노사,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단 제도개선까지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한 평가체제 마련과 근로계약 체결을 법과 관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문안을 확정함.

－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함.

※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 조건을 완화해서 사회적 통념상

-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사규를 바꿀 수 있게 하지는 안건임.
- 이 밖에도 청년고용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였음.
 - 김대환 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급박한 경제 위기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함.

〈표 17〉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 주요 경과

일 정	내 용
2014. 8.19	노사정위86차 본회의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9.19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출범(노사정공약12명)
10.10	특위 산하 전문가그룹 발족
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합의문 채택
2015. 2.27	전문가 1그룹 3대 현안 검토의견 제출
3.6	전문가 2그룹 이종구조와 사회안전망 검토의견 제출
3월 말 - 4월 초	노사정위4인 대표자 회의, 8인 연석회의 등 가동
4.8-4.10	노총 대타협 결렬 선언, 정부 결렬 인정, 노사정위원장 사퇴
8.6	대통령,노사정위 논의 재개, 대타협 도출 촉구
8.7, 8.26	노사정위원장 복귀(8.7), 노총 중집노사정위 복귀 결정(8.26)
8.27, 8.30, 9.8 9.9, 9.10, 9.12, 9.13	노사정4인 대표회의
9.13	노사정4인 대표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잠정 합의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최종 타결

◆ **노동계, 여당의 노동법안 발의에 합의 이행 촉구**

- 지난달 16일 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 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함.
 - 노동계는 여당의 독자적 법안 발의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는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 대타협 파기는 결코 아니라며 맞섬.

〈표 18〉 새누리당, 정부, 노사정 합의문과의 차이

법안 내용	새누리당 법안	정부안 또는 노사정 합의문과의 차이
기간제법	차별시정신청 대리권 누락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누락
파견법	뿌리산업에도 파견 허용	정부안(고소득전문직 및 고령자 파견 완화)보다 파견허용 확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지급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대	노사정 논의, 또는 합의사항 아님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50%, 또는 100% 지급	최근 법원판례는 휴일주간근로 100% 가산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 대중교통은 2017년 시행 - 자가용은 2020년 시행	노사정 의견접근 안 됨.

자료 : 매일노동뉴스, 2015년 9월 17일자.

○ 한국노총은 지난달 18일 새누리당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5대 노동법안 입법 발의에 대해 엄중 항의함.

-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9월 16일,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안에 대한 당론입법발의를 하였고, 9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는 정부안이라고 밝혔다.”면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5대 노동입법안(정부여당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이번 노동시장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의 5대 노동입법안 내용 중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공문에서 밝힌 사항은 다음의 세가지 안전임.

- 1) 기간제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업무, 고령자·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허용 확대
- 2) 실업급여제도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지급기간, 지급대상 확대)
- 3) 기타 휴일근로 가산할증률(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 감액조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

○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협의 결과가 나온 후 노동법안을 발의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기국회 내 의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준비했던 것을 지금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힘.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낮고, 80% 이상이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것을 반영하였음.
- 게다가, 이직수당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에 추가하였다고 밝힘.

※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사측이 4년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사용기

- 간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이직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는 고용률 70% 이상인 대부분 국가들에서 고용 형태의 제한이 없고,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당부함.
-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1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이 보장된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가산수당 할증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였고, 실업급여는 지급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지급기간은 늘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함.

◆ **민주노총, 노사정 타협에 반발**

- 지난달 18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에 반발하며, 추석을 앞둔 23일 총파업을 예고함.
 - 11월에 10만명 규모의 총파업 계획을 밝힌 민주노총이 추가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입법에 반대하기 위함임.
 -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장에서는 일반하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기업들이 적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우려함.
 -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반하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일 것으로 판단하며, 11월 예정된 ‘10만 민중총궐기대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임.

◆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제시**

- 지난달 15일 임금·단체협상에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요구안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음.
 - 사측은 임금과 관련해 기본급 7만 9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경영성과급 ‘300%+200만원’ 지급안을 발표함.
 -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 750% 중 570%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나머지 180%를 성과연동형 부가급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함.
 - 노동조합은 전체 임금구성에서 기본급 비중이 커지면서 임금 안정성이 높아지는 방안이나 기본급이 늘더라도 각종 수당이 통폐합되거나 초과근로 할증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함.
- 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조건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사측은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 또한 제시함.

- 현행보다 1년 먼저 10% 추가 삭감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안은 만 59세에 기본급의 10%를 줄이고, 만 60세에 전년도 기본급 대비 10%를 다시 줄이는 방안임.

※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는 만 60세 조합원에 한해 기본급의 10%를 삭감함.

◆ 서울중앙지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통상임금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29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자체 성과급을 비롯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공사는 2010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성과부가급·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함.

- 전년 근무성적을 평가해 매년 2월 기본급의 50%를 성과부가급으로, 기본연봉의 500%를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경영평가성과급의 250%가 ‘경영평가전환급’ 항목으로 전환되어 성과부가급에 편입되었음.

- 이에 공사는 “성과연봉은 입사 후 1년 미만에 퇴직한 경우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재판부는 “성과연봉 등은 전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당해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며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연봉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